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장덕준 의원)

의안 번호	20-153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0. .

발의자 : 장덕준, 김성희, 김영미, 이민석,
최은하, 한일용

1. 개정이유

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,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고 있는 내용 삭제(안 제10조)
- 나. 적용 규칙의 명칭 정비(안 제12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20. 10. 16. ~ 10. 2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대상임을 인지하는”을 “대상임이 확인된”으로, “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”를 “환수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환수)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<u>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.</u></p>	<p>제10조(환수) ----- ----- ----- <u>대상임이 확인된</u> ----- --- <u>환수한다.</u></p>
<p>제12조(피신고자에 대한 조치)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「<u>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</u>」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피신고자에 대한 조치) -- ----- ----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</u>」----- -----.</p>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